

3.1.15 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09. 09. 07.

개정 2011. 10. 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실험실습기자재의 효율적인 사용 · 기자재의 구입 · 연구실(실험실습실 포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25>

제2조 (구성) ①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7인 이내의 본 대학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25.)

1. 실습 기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
2. 학과 우선 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과별 기자재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실험실습실 포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기자재 담당계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부를 보조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